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제 1-1 판

2022. 1.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I. 추진 방향	1
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개요	1
2. 요건 및 신청방법	1
II. 기관 운영	2
III.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	3
IV. 재택치료 운영지침	8
1. 운영형태	8
2. 재택치료 절차	8
[붙임]	13
[서식]	17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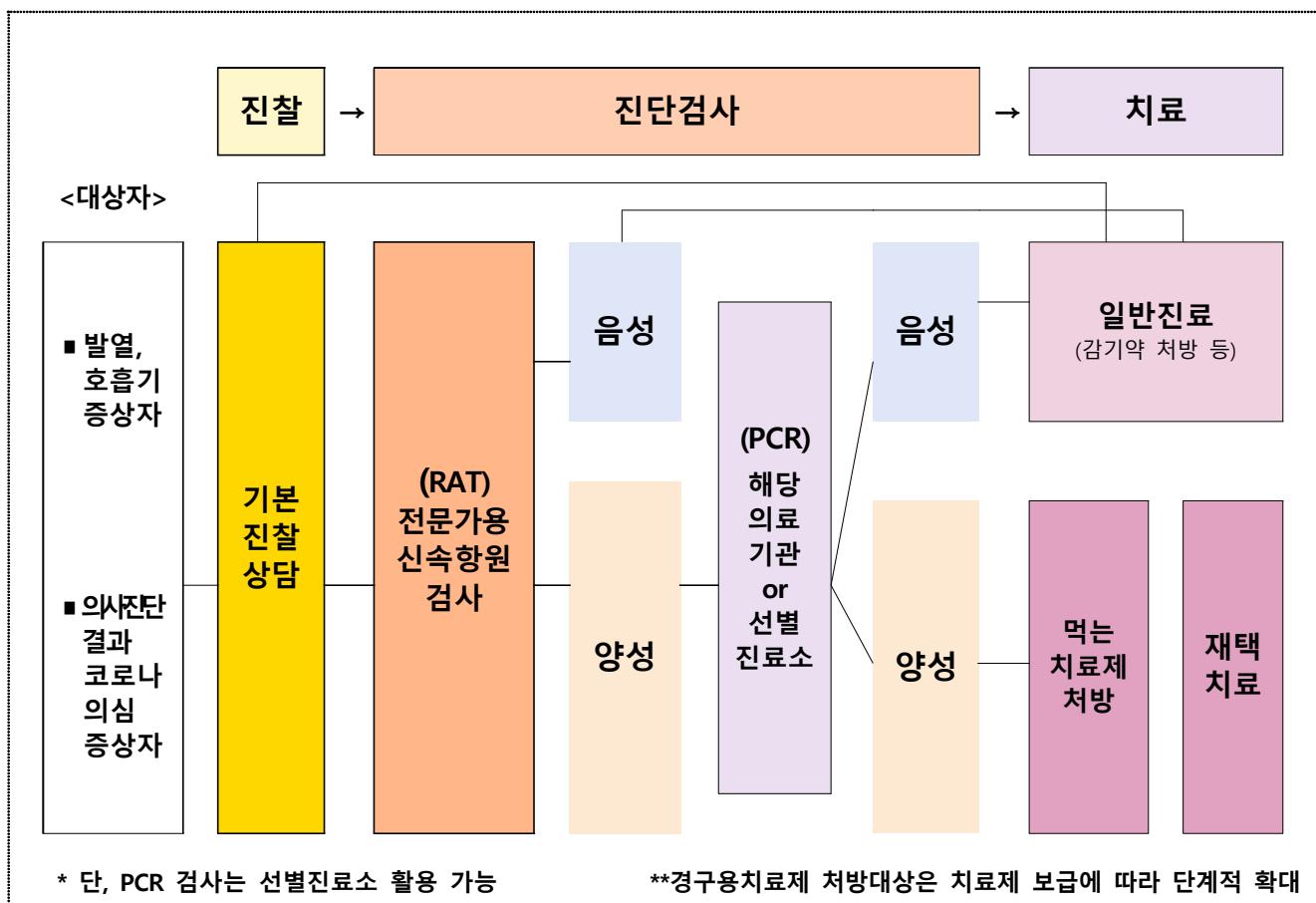
- (목적)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역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운영) 호흡기 환자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여부 검사, 검사 후 재택치료(경증) 등 환자에 대한 의료적 통합관리
- (역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초기 진단, 내원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확인, 환자 진료(처방 등), 재택치료, 중증 환자 전원*
 - * 보건소에 병상배정을 요청하여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보고
- (관리) 의료기관 내 코로나 의심환자(발열, 호흡기증상)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고, 모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 수칙 준수

□ 요건 및 신청방법

- (요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역할을 수행 필요
 - *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PCR 검체 채취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신청) RAT 검사(급여)를 위해 희망 의료기관은 심평원으로 신청*,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
 - * 심평원 전산시스템 구축(2.8 예정) 전에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신청
 - 심평원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를 보건소 등에 안내

- (기본방향)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발열, 호흡기 증상자 등 코로나19 환자 관련 “진찰·검사부터 치료”까지 수행

【진료 프로세스】



- (역할)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하여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통합 관리
 - ▲ 환자 기본진찰·초기진단 ▲ 진단검사(전문가용 RAT, PCR 검사)
- (관리)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포함, 이하 같음)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예방 수칙 준수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III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

1. 방문 · 접수

- (의료기관 방문) 코로나19 의심환자는 KF94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대중교통 이용·밀접접촉·대화 등 자제 (가급적 자차 권장)
 - 사전 진료예약,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환자 간 진료시간대 분리 등을 권장
- ※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별진료소 PCR 대상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와 동일한 절차 수행
- (접수) 입구에 지정의료기관 운영 안내문·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설치하고, 체온 측정·호흡기증상 유무 및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
 - * 접수·수납단계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투명가림막 등 설치가 권장되며 접수직원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필요
- (대기) 동선 구분 등을 위해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환자의 별도 구역 분리가 권장^{*}되며, 환기^{**}(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 필요
 - 예약 등을 통해 대기 인원수를 감소시키고, 환자는 꼭 필요한 경우(검체채취 등)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 착용한 상태를 유지
 - *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을 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이격거리 확보 등 환자를 구별하여 관리
 - ** 질병관리청「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21.10.27.) 참조

2. 진찰

- (진찰)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의료인·직원은 진찰 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소독제 사용
 - ▶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마스크 착용 준수사항
 - 마스크는 업무 중 벗지 않고 착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 마스크가 젖었거나 오염된 경우(환자의 비말이 묻는 등) 즉시 교체한다.
 - 업무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을 나오기 전에 마스크를 벗어 폐기한다.

- (후속절차) 진료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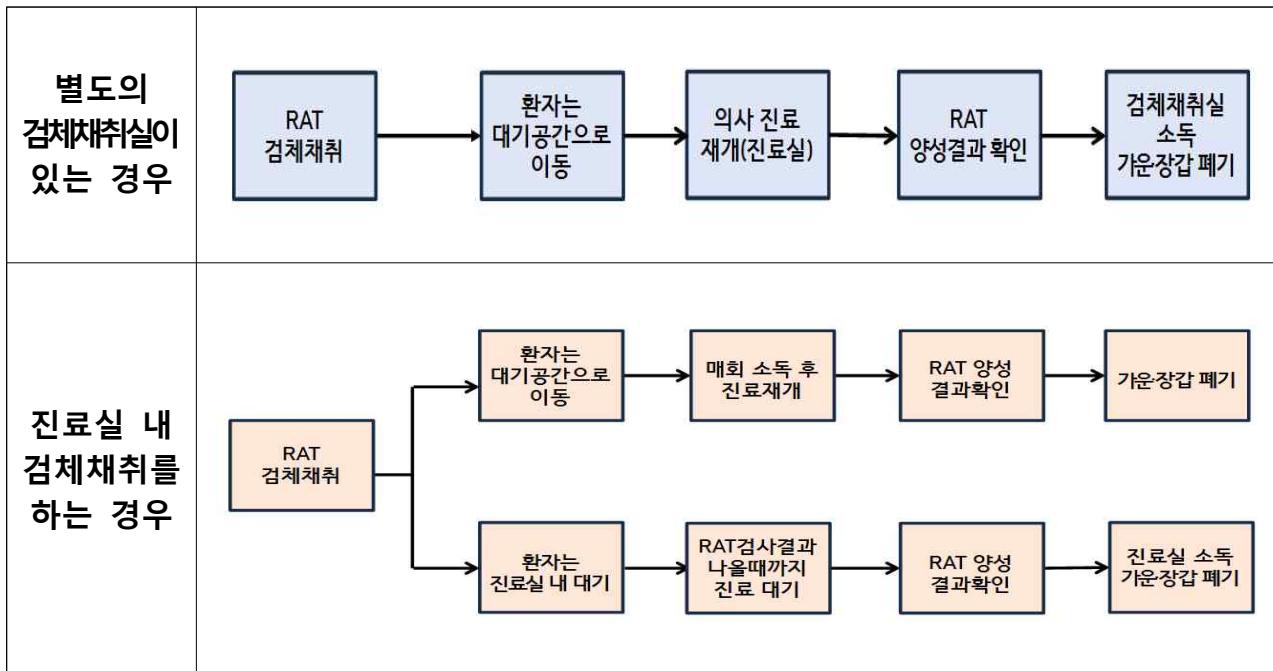
- 코로나19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일반 진료(예시: 감기약 처방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 판단되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3. 진단검사 :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 (신속항원검사 대상)
 - ❶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
 - ❷ 의사의 진단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검체채취·검사) 검체채취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하거나 환기 · 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검체채취 가능
 -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4종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신속항원 검사(RAT) 결과가 양성이 나온 경우 가운·장갑 폐기가 원칙
 - *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쉴드 등), 일회용 긴팔가운 (비닐 또는 부직포 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

< 검체채취 장소에 따른 검사·진료 절차(양성인 경우) >



○ (후속 절차)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가.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검사 종료

- 일반진료 실시, 방역패스용 음성증명서 요청시, 음성증명서* 발급

*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음성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24시간
(향후 관련 양식 등은 지침을 통해 재안내 예정)

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PCR 검체채취 필요

- 자체 PCR 검체채취와 진단검사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
- 자체 PCR 검체채취만 가능한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외부 기관에 PCR 검사 의뢰
-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체 PCR 검체채취가 어려운 경우 PCR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 소견서 발급 후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하도록 안내

다. PCR 검사 실시 후 결과 확인 시까지의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내원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처방 실시

< RAT 양성이 나온 경우 대응 요령 >

① RAT 양성만으로는 보건소에 의심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② 양성 환자가 머무른 구역 및 호흡기 비말이 발생하여 오염된 구역의 표면 소독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자연환기 또는 기계식 환기(음압기)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

※ 양성여부와 상관없이 매회 환자마다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 도구는 사용 후 소독

③ 처방전 등 발급 가능*

*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 수령 권고

(2) PCR 검사

- (PCR 대상)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인 자
- (후속 절차) PCR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가.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종료
 - 나.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 신고 후 코로나 확진자 진료 연계(후술)
 - △자체 환경관리 유지, △의료진 및 내원객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강조, △의료진 의심증상 시 업무 배제 및 진단검사 실시

(3) RAT 또는 PCR 검사 후 안내사항

- (귀가방법) RAT 또는 PCR을 위한 검체채취 후 귀가시 안내사항
 - 가. RAT 또는 PCR 검사를 한 환자는 자차, (방역)택시 이용(대중교통 이용자제)
 - 나. 마스크(KF94 이상) 착용,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귀가 후 자택 대기

4. 치료 : 처방 및 재택치료

(1) 일반적인 진료

- (진료 대상)
 - ①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 경우
 - ②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이었지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 (진료 내용) 일반적인 진료 (예시 : 감기약 처방)

(2) 코로나 확진자 진료

- (진료 대상)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사전 절차)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 시 “신속항원검사 기관 및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신청
- (진료 내용)

※ 확진자 진료 세부에 대한 내용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참조

- ① 의약품 처방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및 필요시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 등 처방

* 치료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4판)」 확인

- ② 재택치료 (p.8 이하 참조)

<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 준비사항 >

① 보건소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신청 (→서식2, 서식3)

② 보건소에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설치·등록 신청
(→서식6)

◆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 (구축목적)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및 재택치료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비대면진료 지원
- (접속주소) <http://hcms.mohw.go.kr>(관리자, 의료진)

1. 운영형태

◆ 현행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면서, 의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재택치료 관리모형 다변화

- 의원급에서 진찰·검사·재택치료까지 모두 실시하는 경우, 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관리 가능시 야간 자택 전화대기(On-Call) 형식의 모니터링 허용
 - 의원급에서 야간 관리를 하지 않을 시, 주간(9시~19시)에는 의원급에서 관리하고 야간(19시~익일9시)에는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병원급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하 “야간 협력 관리의료기관”)에서 대응
- ※ 기존 운영되던 24시간 대응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하 “기존 방식 관리의료기관”)은 동일 형태로 계속 운영

2. 재택치료 절차

※ 아래 안내사항 외의 내용은 별도 안내 전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5판) 적용

1. 확진자 등록

- ① 내방 환자의 검사결과를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의료기관(이하 ‘원 의료기관’)은 확진자 정보를 보건소에 신고
- ② 원 의료기관은 기초 문진하여 기본정보, 기저질환력 등을 「생활치료 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이하 ‘진료지원시스템’)에 입력
 - * 설치 주소: <http://hcms.mohw.go.kr> (관리자, 의료진)
 - ** 진료지원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보건소로 사전 신청 필요 (붙임4)
- ③ 보건소는 확진자 정보 확인 시 키트 배송, 격리자 보호구 제공, 방역수칙 안내 등 기존 절차 진행

2. 재택환자 확정

- ① 등록된 환자는 확진자를 진찰·검사한 원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실시
- ②-1 다만, 원 의료기관이 환자가 재택치료에 부적합하여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는 시·도 배정반과 협의하여 병원·생활치료센터 배정 및 이송 등 지원
- ②-2 재택 치료에 적합하더라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 대상자는 보건소에 연락
- * 만성신질환, 당뇨, 활성암, 만성폐질환, 심혈관계질환, 면역억제질환, 고혈압, 겸상 적혈구질환, 신경발달장애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참조)
- 보건소는 “기준방식 관리의료기관”에 배정

3. 건강모니터링 및 진료 실시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 불가

- ① 원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확진 사실 및 재택치료 대응요령을 안내

◆ 재택치료 대응요령 안내 (예시)

- 건강모니터링 방법 (+앱을 통한 증상 기입 방법 등)
- 증상 발현 또는 악화 시 연락 방법
- 주-야간 대응 기관이 다른 경우, 야간에 연락할 기관을 사전 안내
- 대면 진료 필요시, 응급 이송 필요 시 요청 방법 등

- ② 건강 모니터링 실시

- (주간(9~19시)) 7일간 환자의 이상징후 등을 1일 1회* 유선으로 모니터링하여 ‘진료지원시스템’에 결과 입력

* 일반관리군으로 1일 1회

** 휴일(공휴일 포함)은 환자정보 접근 및 신속한 유선 대응 등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 자택에서도 전화대기(On-Call) 형식의 모니터링 가능

- (야간(19~익일9시)) 운영 형태에 따라 원 의료기관 또는 야간 협력 관리의료기관에서 야간 응급 상담 등 실시
 - 의원급 원 의료기관에서 진찰·검사·재택치료까지 담당하는 경우, 야간에 환자정보 접근 및 신속한 유선 대응 등 모니터링이 가능할 시 자택에서도 전화대기(On-Call) 형식의 모니터링 가능
 - 원 의료기관이 주간 모니터링만 담당하는 경우, 시·도(또는 시·군·구)에서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야간 협력 관리의료기관"을 사전에 매칭
- ③ 이상 징후 발견시 유선 등으로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 실시, 검사·투약 등 대면진료 안내,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소 등에 이송 요청

4. 대면 외래진료 · 병상입원 · 응급상황 대응

- ① (대면 진료) 환자가 검사, 진료, 처방, 투약 등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 의료기관이 재택치료추진단(지자체)으로 신청

◆ 외래진료센터 진료절차

- (접수) 동선 분리 등을 위해 사전예약제, 해당기관의 외래진료 시간(기관 여건에 따라 확대 운영 가능)에 진료
 - * '관리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지자체)으로 외래진료 신청 → 재택치료추진단(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 의뢰·예약 → 이송수단 마련
- (이송) 자차를 우선 이용,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별 이송체계* 활용
 - * (예시) 방역차량 또는 방역택시, 지자체별 계약된 민간위탁구급차
- (대면진료)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료 실시,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입원 또는 전원 추진
 - * (진료중 응급상황시) 재택치료추진단(지자체)과 119에 통보, 사전 지정의료기관으로 이송

- ② (병상 입원) 환자의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어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 의료기관은 재택치료추진단(지자체)과 협의 후 전원
- * 재택치료추진단은 시·도 병상배정반을 통해 가능 병상 확인 →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 등으로 이송

◆ 전원이 필요한 증상

- : 일상생활 중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지속적인 흉통, 식욕부진 등

③ (응급 이송)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원 의료기관이 응급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재택치료추진단(지자체) 또는 119구급대에 응급이송 요청

5. 격리 해제

① (건강상태 평가) 7일간 건강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원 의료기관이 재택치료의 건강관리 종료 판단·결정

- 원 의료기관은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보건소로 격리해제 요청

◆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이 원칙

-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7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최소 7일 경과
(단,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② (격리 해제) 관할 보건소장은 재택치료 해제를 결정하여 환자 안내

< 재택치료 관련 행정적 조치 사항 >

의료기관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신청
-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설치·등록신청

◆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 (구축목적)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및 재택치료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비대면진료 지원
- (접속주소) <http://hcms.mohw.go.kr>(관리자, 의료진)

지방자치단체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신속 지정
- 원 의료기관 - '야간 협력 관리의료기관' 간 사전 매칭
-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대상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 지원시스템」 등록신청 지원 및 사용 교육 실시
- 병상배정 및 응급 이송 등을 위한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 * 자체(재택치료추진단, 시도·병상배정) - 관리의료기관 - 소방청(119) 간 핫라인 구축 및 기관 교육 실시

붙임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

○ 전국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알림 → 심평정보통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엑셀파일 업로드)
※ (메인팝업)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안내 바로가기
-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추후 안내)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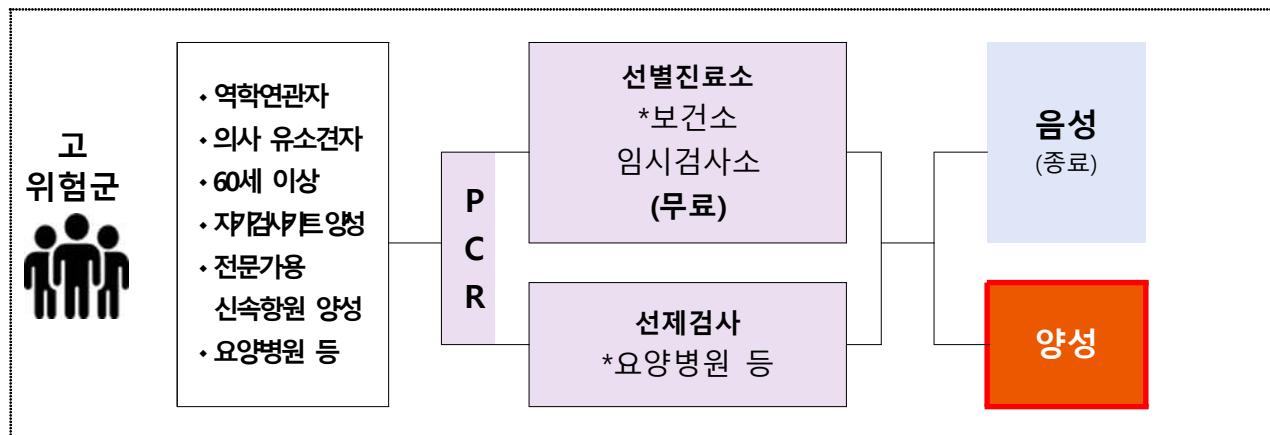
PCR 검사 후 환자 주의사항

-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 등 개인방역 및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직후 다른 장소를 들르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 귀가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여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하지 마시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택 내에서도 가족간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상 악화시 보건소 또는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체계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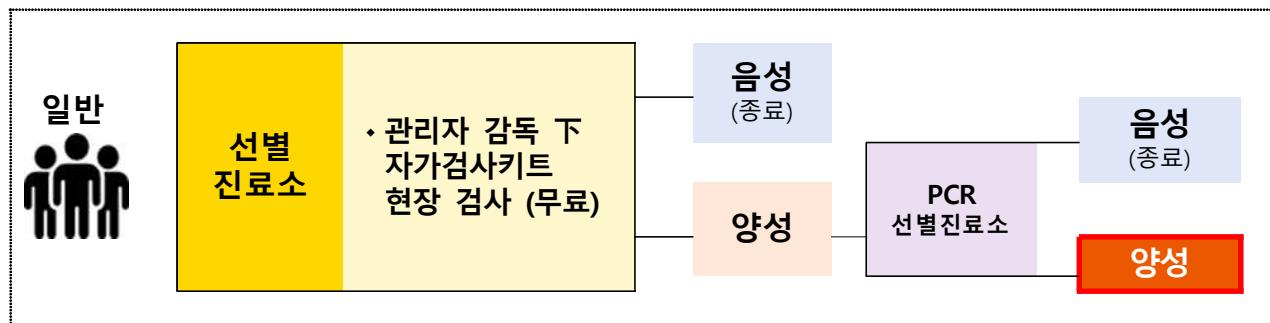
① 아래 고위험군 해당 국민은 기존과 같이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바로 PCR 검사 실시(무료)

- ▲ (역학 연관자)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사람
- ▲ (의사소견서 보유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
- ▲ (60세 이상) 코로나19 의심시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PCR검사 가능
- ▲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 ▲ (신속항원 양성자)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확인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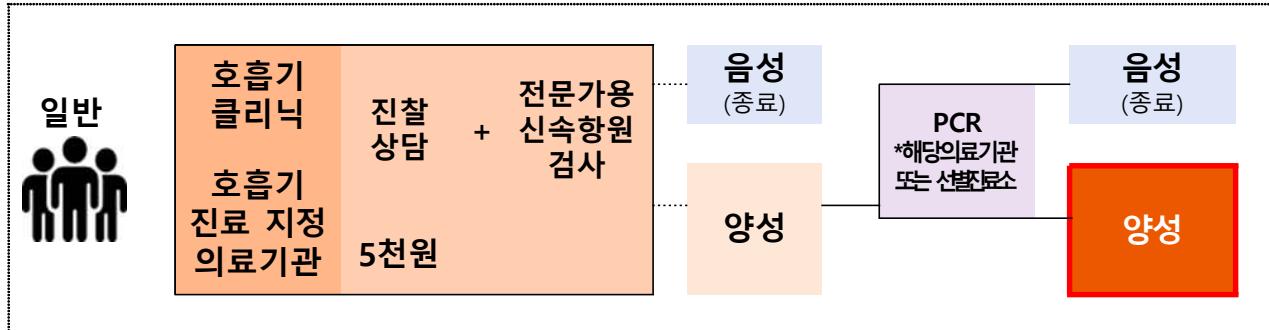
②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에 방문시 자가검사 키트를 제공 받아 자가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음



③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지만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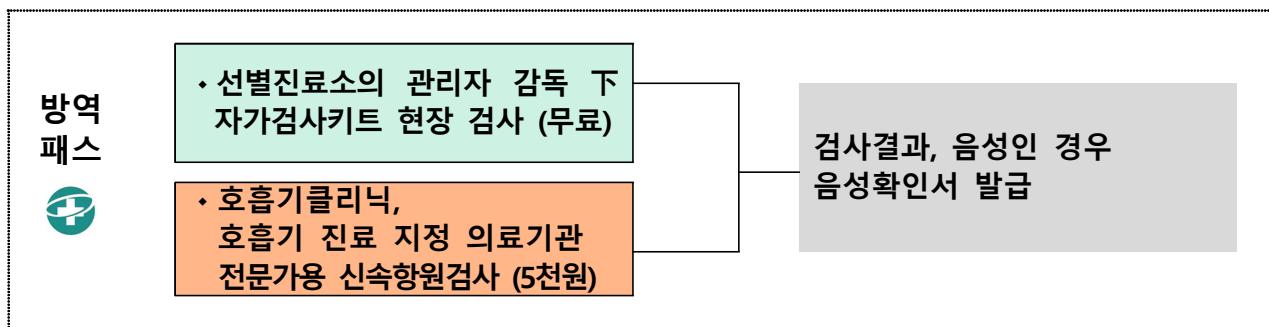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진찰료 5천원(의원 기준), 검사비 무료)
 - 양성인 경우 PCR 검사(해당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 무료)



④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 검사키트를 받아 검사(무료)한 후 음성이면 음성확인서 발급
- ②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검사비 무료, 진찰료 5천원)를 받아 음성이 확인된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

※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24시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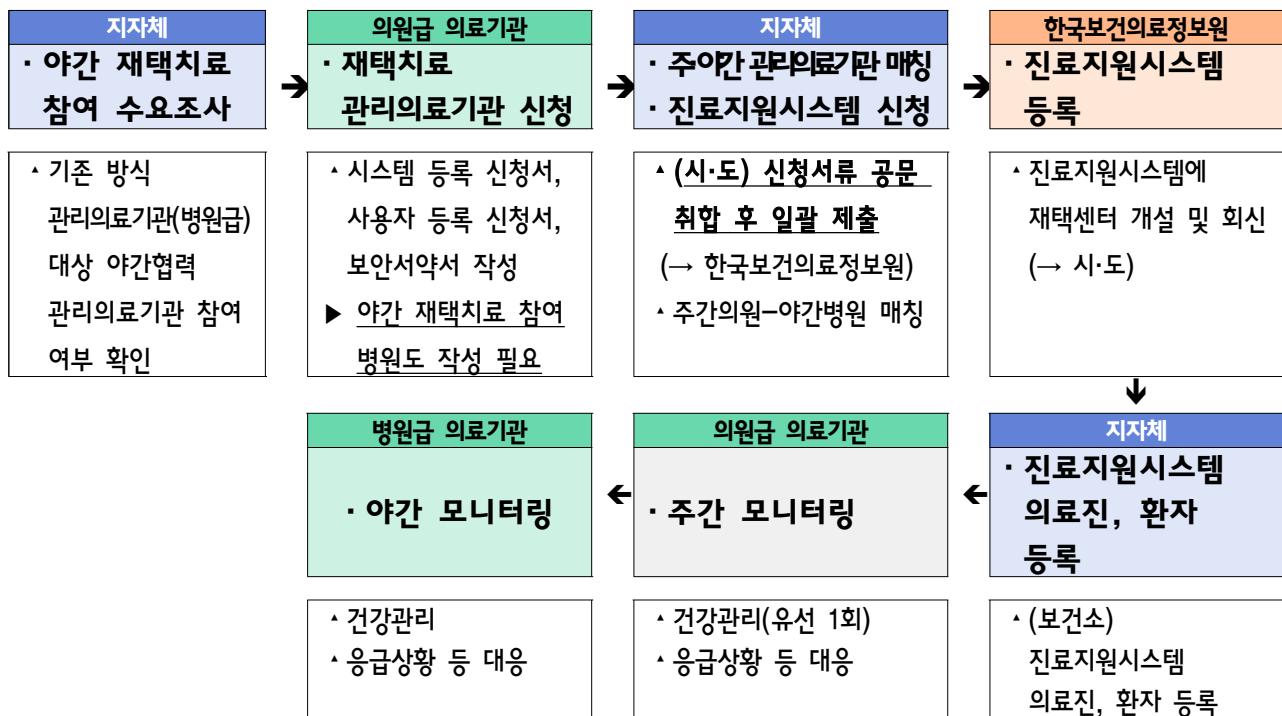


붙임4

주간 의원-야간 협력 관리의료기관 연계형 재택치료 관리 절차 안내

□ 병·의원 연계 및 재택치료 절차

- ① 참여 기관 수요 파악 → ② 병·의원 매칭 → ③ 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사용 신청 서식 제출 → ④ 진료지원 시스템 등록 → ⑤ 환자 배정 → ⑥ 환자 관리



□ 기관별 조치사항

- (의료기관) 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사용 서식* 작성·제출(→지자체)
- * 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등록신청서, 사용자 등록신청서, 보안서약서
- (지자체) 주-야간 관리의료기관 매칭, 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등록신청서 취합·제출 및 의료진 등록
- (시·도) 관할 시·군·구의 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등록신청서 취합하여 제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보건소) 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에 의료기관이 개설되면,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통해 의료진 ID 등록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참여 의료기관 재택센터 개설 및 보건소 관리자계정 부여 (→시·도를 통해 전달)

※ 재택치료관리팀 담당자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담당 의료진 전화번호를 기억하세요. 언제 어떤 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지만 알면 스스로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웃을 위해 이렇게 하세요.

- 재택치료 기간 중에는 절대 외출을 하지 말아 주세요.
- 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택에만 계세요.
-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때는 반드시 재택치료관리팀에 연락하세요.

2 다른 가족을 위해 집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 방에 혼자 있도록 하세요.
- 방에서 나올 때 마스크를 쓰세요. 2미터 이상 가족과 떨어져 있으세요.
- 다시 모두 모이기 위해 식사는 치료기간 동안 혼자 드세요.
- 방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을 매일 한 번 이상 소독 티슈로 닦으세요.
- 밥그릇, 수건, 침대, 컴퓨터는 따로 쓰세요.
- 가족 모두 알콜 소독제나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소독하세요.

3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불안해하지 않기 :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분 집에서 잘 쉬면 크게 고생하지 않고 일주일 내에 낫습니다.
- 가장 좋은 치료법 : 잘 쉬기, 물 많이 마시기, 아프면 진통제 먹기
-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기 : 충분히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샤워하기, 자주 크게 숨을 쉬고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기, 술 마시지 않기
- 마음은 가까이 :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하기

4 이럴 때는 재택치료 의료진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성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환자가 발열, 기침,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을 때
- 아픈데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실 때
- 더 심해지는지 잘 살펴보고, 기다려도 아래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때
 - ✓ 발열, 오한, 기침, 목이 따가움, 코막힘, 콧물, 근육통, 두통, 피곤함
 - ✓ 맛을 못 느끼거나, 냄새를 맡지 못함
 - ✓ 메스껍고 토함, 설사

5 이럴 때는 기다리지 말고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진료지원앱 응급전화에 연락하세요!

- 본인이나 확진된 가족이 상태가 나빠지는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 본인이나 가족의 상태가 자꾸 나빠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면,
 - ❶ 먼저, 숨이 얼마나 찬지 확인하고 손가락 산소 측정기로 재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팬찮더라도 움직일 때 숨이 차다면 바로 재보세요.
 - ☞ 94%보다 낮게 나오면 빨리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진료지원앱 응급전화에 연락하세요.
 - ❷ 숨이 차지 않아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 아래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빨리 연락하세요.
 - ✓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참, 헐떡거림.
 - ✓ 나아지지 않고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함
 - ✓ 사람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할 때
 - ✓ 깨워 놓아도 자꾸 자려고 할 때
 -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할 때
- ☞ 비상상황으로 119에 먼저 연락하시게 되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꼭 밝히세요.

6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지 말아 주세요.
- (일반쓰레기) ❶소독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보관 ❷재택치료 종료 3일(72시간)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외부 소독 및 이중밀봉 후 배출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❶소독 후 분리 보관 ❷재택치료 종료 3일(72시간) 후 다시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후 배출

서식2**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지정신청·변경서****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신청·변경서**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의료기관종별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면허번호		생년월일	

희망 운영 형태	24시간 (상시근무)	주간+야간 자택대기 (유선 모니터링)	주간 (야간 협력 관리기관 연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체크리스트		예	아니오
1) 1일 1~2회 건강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 일반관리군 관리는 1일 1회, 집중관리군 관리(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는 1일 2회			
2)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3) 유증상 지속 등 전원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은 취침 전 1회 이상 추가 전화 확인 등 실제 전원 전까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이상 징후 발견 시 영상통화로 안부를 즉시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 실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 요청이 가능합니다.			
5) 야간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4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3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현황 및 운영 계획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현황 및 운영 계획서				
의료기관명			요양기호	
일반현황 ¹⁾	기관 유형	<input type="checkbox"/> 감염병전담병원 <input type="checkbox"/> 국민안심병원 <input type="checkbox"/>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input type="checkbox"/> 선별진료소 운영경험 <input type="checkbox"/>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특수병상 운영 여부	<input type="checkbox"/> 응급실 <input type="checkbox"/> 중환자실		
	재택치료 운영장소 지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미지정		
참여 인력 현황 및 운영계획				
참여인력 ²⁾	의사	간호(조무)사	기타 모니터링 인력	행정인력
	()명	간호사 ()명 이외 간호인력 ()명	()명	()명
		전담 ()명 비전담 ()명	직종1 ()명 직종2 ()명	
인력운영 계획 ³⁾				
이송계획 ⁴⁾				
작성자	성명 : 소속부서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작성일자
※ 작성요령 1) 해당란에 ✓ 표시 2) 재택치료 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기재, 참여인력별 세부현황은 서식8-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 3) 24시간 대응 가능한 인력 운영계획을 반드시 작성 4) 비상연락망,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계획, 이송의료기관 확보 여부 및 이송의료기관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4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등록신청서

항목	내용		비고
관리자 정보 <small>* 시군구 담당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small>	계정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부여	미작성
	소속	00시 00구 000보건소 000팀	
	이름	홍길동	
	유선 연락처	예) △△-0000-0000	사무실 직통번호
	휴대폰	예) △△△-0000-0000	휴대전화 번호
진료지원시스템 등록할 재택센터 명	예) 서울시종로구_000의원		시도 담당부서에서 가이드 제공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명	예) 000의원		주간 의원별로 신청
요양기관번호	11223344		
의료기관 주소	예) 00시 00구 00동 000로00		
의료기관 대표 전화번호	예) 00-000-000		
의료기관 응급 전화번호	응급전화번호(필수) - 관리자가 수정 가능		환자가 응급 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비 고	개소 희망일 : 2021년 00월 00일		평일 기준 최소 1일 전까지 접수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연락처	시스템관리자 등록	시스템 운영 종료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계정 등록 등 시스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귀중

서식5

관리자 보안서약서 (기초지자체 신청자가 작성)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이용자 본인확인 및 사용자계정 관리, 접근권한 관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염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가.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 나.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및 제88조(벌칙)
 - 다. 감염병예방법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및 제78조(벌칙)
 - 라.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등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귀하

서식6**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신청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명			
이 름		직위(직급)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용자(희망)계정	① 영문, 숫자 조합 4자 이상		② 영문, 숫자 조합 4자 이상
이용권한	<input type="checkbox"/> 의사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input type="checkbox"/> 행정		

위와 같이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사용자 계정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 임]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1부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용자계정, 이름, 연락처, 소속기관명, 직위(직급)	시스템 사용자 등록	시스템 운영종료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스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건소장 귀하

본인 은(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이하 '진료지원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진료지원시스템의 제규칙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진료지원시스템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감염병예방법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등에 따라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밀 및 의료, 조산 또는 간호 등 환자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 및 제공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진료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규칙 및 보안업무 규칙을 수용하고 준수한다.
3. 재직 중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취득한 진료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파일 혹은 수기대장도 사전에 진료지원시스템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의 유출 및 무단사용을 하지 않는다.
4. 진료지원시스템 내의 시스템 사용자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진료지원시스템 관리자가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 접근하고, 책임 있고 윤리적인 자세로 사용하며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자신의 계정에서의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진료지원시스템 사용 허가가 종료된 후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CD, USB, 동영상 등 포함한 각종 자료)를 완전히 폐기 및 파기한 후 종료함을 서약한다.

7. 진료지원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연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000 의원 생년월일 0000년 0월 0일

직위(직급) 성명 흥길동 (서명 또는 인)

000 보건소장 귀하